

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340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09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☐ 제안이유

-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등록된 문화재까지 확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함 (안 제 10조제2항)

동두천시 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

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"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"을 "문화재에 대한 감면"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10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 <생략></u> 1-3 <생략> <u><신설></u>	<u>제10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(현행본문과 같음)</u> 1-3 (현행과 같음) <u>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<u>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</u> <u>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</u>